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

2023.6.16.(금), 14:00/  
교육위원회 회의실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

#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

---

2023. 6. 16.

서울특별시교육청

# 1.

## 유엔 서한 관련 사후 조치사항 보고

1. 외교부 답변 관련 후속 조치내역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2. 교육부 유엔인권이사회 파견 공무원 현황	
3.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단체 현황	
4. 사무전결규칙 정비 추진 내역	행정관리담당관
5. 외교부 답변 관련 사안 점검 결과	감사관

# 113 외교부 답변 관련 후속 조치내역 및 질의사항 답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 경 과

- (외교부 → 서울시교육청) 2023. 1. 27.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에 대한 답변(의견) 요청 (붙임 1, 4p)
- (서울시교육청 → 외교부) 2023. 2. 24. 답변(의견)서 회신 (붙임 2, 7p)

## □ 조치사항

### 1. 외교부 답변 관련 후속 조치내역

- 외교부에 답변(의견)서 보완 요청: 2023. 3. 13. 서울시교육청 → 외교부
  -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 해달라는 의미는 기관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현황을 파악’ 해 달라는 취지 (붙임 3, 11p)
  - 외교부에서 정부 부처 답변(의견) 수합하여 정부 입장 정리 예정
    - ※ 유엔 답변 회신 일정은 미정
- SBS 언론보도에 대한 후속 조치(서울시교육청 외교부 답변관련)
  - 2023. 3. 13. SBS 보도에 대한 수정 요청 (붙임 4, 12p)
  - 2023. 3. 14. 외교부 답변 회신에 대한 설명자료 기자들에게 배포 (붙임 5, 14p)
- 향후 계획 : 정부 공식 입장 확인

\* 유엔 홈페이지 <https://spcommreports.ohchr.org/TmSearch/Mandates?m=47%2c280>

## 2. 교육부 유엔인권이사회 파견 공무원 현황

- 교육부 유엔 인권이사회 파견 공무원 현황 파악 (붙임 6, 16p)
  - 2023. 4. 18. 교육부에 현황 요청: 해당 사항 없음

## 3.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단체 현황

-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단체 파악 : 언론보도자료 (붙임 7, 17p)
  - 2022. 12. 15. 4개 단체 인권침해 유엔 긴급진정 제기
  - ※ 교육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절차에 서울 등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2022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인권침해 긴급진정 제기(언론보도 참조)
  - 진정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외교부

외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서 작성 요청

1. 주제네바대표부-S936(2023.1.26) 관련입니다.
2. 주제네바대표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가 1.25.(수) 우리 외교부장관 앞으로 전달한 성소수자 차별 금지 관련 △서둘시·충청남도의 학생인권조례 등 폐지 및 △2022 교육부 교육과정 개결 동향에 대해 우리를 제기하는 공동서한을 접수하였습니다.  
\*교육권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성취지향·성경채성 독립전문가, 여성 차별 심추그룹
3. 상기 서한 관련, 특별절차측은 아래 사항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 서한 내용 관련 추가 정보 또는 의견
  - △서한에 적시된 사항이 사실일 경우,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의무와의 합치 여부, △국제 인권기준과의 불합치를 교정하기 위한 조치 계획
  - 전국 모든 학생과 관련하여, 성경채성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
  -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생식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
4. 이와 관련, 우리측 답변서(국영문) 작성을 요청드리니, 2.24.(금)까지 우리부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특별절차 서한  
2. 작성 양식(국영문) 끝.



수신처 법무부장관(인권정책과장), 교육부장관(학교교육협력과), 외교·사민, 행정안전부(인권실천과), 충청남도지사(정책실장), 서울특별시교육감(민주시민교육정책과), 광주광역시교육감(민주시민교육과)

외무사무관 김세윤 외무사무관 대령 8/27 조현선 인권사회과장 권영

참조자

시행 인권사회과-351 ( 2023. 1. 27. ) 접수 민주시민생활교육과-1628 ( 2023. 1. 30. )  
우 03172 서울특별시 중로구 사직로8길 80 (도일동) / http://www.mofa.go.kr  
전화 02-2100-7262 /전 송 02-2100-7934 /svok1n168@mofa.go.kr /비공개

---

#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서(양식)

---

2023.0.00.(0), 00부 00과

【 서한 내용 관련 추가 정보 또는 의견 】

-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4pt
  - ※ 맑은 고딕 12pt

【 △서한에 적시된 상황이 사실일 경우,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의무와의 합치 여부 △국제인권기준과의 불합치를 교정하기 위한 조치 계획 】

【 전국 모든 학생과 관련하여,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 】

【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생식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 】

/끝/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Response  
to the Joint Communication  
from UN Human Rights Council Special Procedures**

(February 00, 2023)

**1. Additional Information or Comment in relation to the analysis presented in the Joint Communication**

*Times New Roman 12pt (국문 자료가 개조식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영문의 경우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 요망)*

**2. Clarifications on how the reported developments, if confirmed, are compatible with the ROK Governments obligations under the provisions cited in the Joint Communication, and the steps the ROK Government plans to undertake to remediate the inconsistencies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3.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to ensure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and remedy for victi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for all students at the national level**

**4.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to ensure reproductiv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population without discrimination**

/End/

##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서

2023.2.24. 서울특별시교육청

### 【 서한 내용 관련 추가 정보 또는 의견 】

- 서울시교육청은 귀하께서 특별서한(Ref.: OL KOR 6/2022)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사안이 국제인권 기준 특히 차별금지원칙에 따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주신 것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특별서한에 담긴 우려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의견개진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의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드립니다.

나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하여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서한에 적시된 상황이 사실일 경우,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의무와의 합치 여부 △국제인권기준과의 불합치를 교정하기 위한 조치 계획 】

- 서신에 적시된 상황은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주민청구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수리되어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79845.html>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 수리됐다

-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의 이유가 국제인권기준 및 현행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과도 불합치하다는 의견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전국 모든 학생과 관련하여, 성적체성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 】**

- 서울시교육청은 성적체성 및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있도록 학생인권종합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과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생식권 재생산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 】**

- 학생의 건강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는 규범 및 인식개선 교육과 성인지적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RESPONSE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TO THE JOINT COMMUNICATION FROM SPECIAL PROCEDURES**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ebruary 24, 2023)

**1. Additional Information or Comment in relation to the analysis presented in the Joint Communication**

-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expresses gratitude for your joint communication(Ref.: OL KOR 6/2022) regarding the demand for the abolition of the Student Rights Ordinance. The Office recognizes your serious concerns about attempts to diminish th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particularl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We agree with the concerns expressed in the letter and will actively engage with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to ensure that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s not curtailed.

Furthermore, we request an official visit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s Special Procedures to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to investigate and assess the situation regarding the repeal of the Student Rights Ordinance.

**2. Clarifications on how the reported developments, if confirmed, are compatible with the ROK Government's obligations under the provisions cited in the Joint Communication, and the steps the ROK Government plans to undertake to remediate the inconsistencies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confirmed the veracity of the situation described in the letter.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has received the petition to repeal the Seoul Student Rights Ordinance and will discuss it in the relevant committee.
-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ntends to convey its opinion to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that the reasons for the petition ar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and laws.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79845.html>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 수리됐다

**3.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to ensure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and remedy for victi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for all students at the national level**

-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plans to reflect plans for counseling support and rights remedies for sexual and gender minority students within our jurisdiction, in the Comprehensive Student Rights Plan to ensure that such support and remedies are available. We will endeavor to promote a gender-equitable school culture and provide education for raising awareness.

**4.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to ensure reproductiv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population without discrimination**

- We will endeavor to guarantee th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of students by implementing education on awareness improvement, including education on norms that infringe upon the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 of students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신 외교부장관(인권사회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교육청)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 보완 요청

1. 관련: 외교부 인권사회과-351(2023.1.27.)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답변 회신(민주시민생활교육과-3477, 2023.2.24.) 한 내용 중 다음의 내용에 대해 추가설명 및 보완 요청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이유: 불필요한 오해 및 해석 방지

- 언론보도 SBS “ [단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UN 조사’ 요청” (2023. 3. 9.) , “[단독] 유엔에 보낸 답변…“한국 헌법 불합치” (2023. 3. 9.) 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이 기관들의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추가 설명이 필요함

나. 요청 사항 : 답변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 반영 요청

다. 요청 내용

[본 청의 서한 답변서 내용 관련 추가 정보 또는 의견]

첫번째 서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하여 직전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는 내용에서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 해달라는 의미는 기관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현황을 파악’ 해 달라는 취지임 (서울시교육청이 인법기관인 서울시의회나 독립적인 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부처들의 조사를 요청한 것은 아님)

- 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기관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

SBS임태우 기자님께

안녕하십니까. 신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옹호관 우필호입니다.

학생 인권 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기자님이 쓰신 지난 3월 9일 자 「〔단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UN 조사’ 요청」 기사의 내용 중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보도 내용 중 “서울시교육청 또한 유엔 측에 한국을 공식 방문해 교육부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는 부분과 관련입니다. 물론 같은 내용의 이날 저녁 9시 보도 기사인 「[단독] 유엔에 보낸 답변...“한국 헌법 불합치“」 에는 앞서 언급한 기관인 교육부와 서울시의회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서의 취지는 답변서의 내용 그대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하여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하여, ‘상황을 조사’ 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 기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 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기자님에 쓰신 기사 내용을 보고, 마치 서울시교육청이 입법기관이 서울시의회나 독립적인 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부처들에 대한 기관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기사 내용에 대한 수정 또한 보완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사 내용 중 “답변서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쟁점이 되고 있는 성 소수자 학생 인권 관련해 추가로 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점입니다.” 라는 부분과 관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저녁 9시 방송 기사에는 “쟁점이 되고 있는 성소수자 학생 차별 금지 방안 등을 더 강화해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기자님께서 답변서를 읽어 보셨듯이 유엔 인권위원회 서안 질의 내용 자체가 “ [ 전국 모든 학생과 관련하여, 성적체성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 ] ” 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성적체성 및 성적 지향에 따른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답변서는 내용 그대로, 이들에 대한 “상담 지원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인권종합계획 등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현재 운용 중인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영되어 논란이 된 바가 있고, 내년도에 시행될 3차 학생인권종합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 구제 절차는 조례를 통해 현재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서 어디에도 “성 소수자 학생 인권 관련해 추가로 강화 대책을 내놓겠다.” 거나 “성소수자 학생 차별 금지 방안을 더 강화해 반영하겠다.” 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두 가지 점으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오해를 해소하고, 당초 유엔 질의 서한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답변서 내용 취지가 시의회 등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사의 수정 또는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학생 인권 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빠른 조치를 기대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질의 관련〉  
**외교부 제출, 서울시교육청 답변서(국문, 영문) 자료 제공**

○ **【외교부 제출 경과】**

- 외교부가 2023. 1. 27.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등과 관련한 우려를 담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공동서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음
- 외교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 내용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외교부 지정 국문 및 영문 질의 및 답변 양식(국문, 영문)은 붙임 자료 1과 같음
- 서울시교육청이 2023. 2. 24. 외교부에 제출한 답변서(국문, 영문)는 붙임 자료 2와 같음

○ **【답변서 유엔 발송 여부】**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답변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직접 제출된 사실이 없음. 외교부의 제출 요구에 따라 외교부에 제출한 것임
- 외교부는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법무부 등을 포함한 각 부처의 답변을 수합하여 정부의 공식 답변을 정리중 임

○ **【답변서 내용 중 조사 요청 취지 등】**

- 서울시교육청의 전체적인 답변 취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관련한 우려에 동감하며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여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임
- 답변서 중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 회 등을 포함하여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 한 부분은 기관 자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 그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임
-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따른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밝히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서 내용 그대로, 이들에 대한 “상담 지원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인권종합계획 등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과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임

○ 외교부에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 보완 요청함(2023. 3. 13.)

**[본 청의 서한 답변서 내용 관련 추가 정보 또는 의견]**

첫번째 서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하여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는 내용에서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 해달라는 의미는 기관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현황을 파악’ 해 달라는 취지임 (서울시교육청이 입법기관인 서울시의회나 독립적인 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부처들의 조사를 요청한 것은 아님)



교육부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의회(정책협의회) 요청에 따른 협조 요청 회신

1. 관련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7791(2023. 4. 18.)
2. 위 호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파견된 우리 부 직원 현황은 '해당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끝.

교육부장관



주무관 홍은진 주무관 서보승 행정사무관 박치연 서기관 하전례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10659 ( 2023. 4. 25. ) 접수 민주시민생활교육과-8391 ( 2023. 4. 25.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www.moe.go.kr  
(어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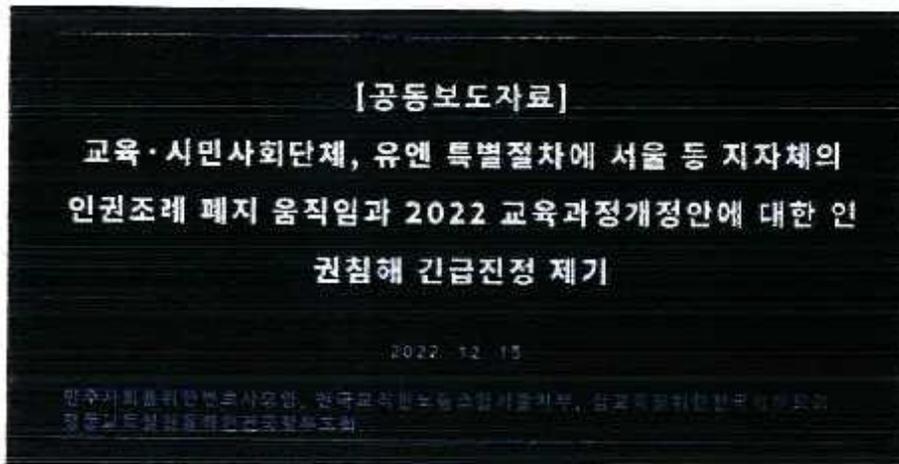
전화 044-203-6196 /전송 044-203-6144 /hej0722@korea.kr /비공개

한국NGO신문  
HOME 인권·교육

## [단독] 민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관련 "UN에 긴급 진정"

이영일 기자 | 승인 2022.12.15 20:3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 4개 단체 공동으로 UN에 관심과 촉구  
진정단체 "한국 학생인권 퇴보 위기 우려,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혐오"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인권침해 UN 긴급진정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진정 단체)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인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 대해 긴급진정(Urgent Appeal)을 제기했다.

진정 단체들은 "지난 13일,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이 상소수자 차별이며,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사회구조의 불평등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1-4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 답변」 전결사항에 대한 사무전결 정비 추진(안)

행정관리담당관

## □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 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 사무전결 규칙 주요 내용

### ○ 전결권 현황

구 분	행정안전부 권장 비율	시·도 평균 (23.3.1기준)	현행 (21.12.1.시행)
합계		1,678(100%)	2,312(100%)
교육감 결재	4% 이내	127(7.6%)	115(5.0%)
부교육감 전결	8% 이내	125(7.5%)	156(6.7%)
실·국장 전결	25% 내외	373(22.3%)	482(20.8%)
과장 전결	55% 내외	870(51.6%)	1,293(55.9%)
담당 전결	8% 이상	185(11.0%)	266(11.5%)

※ 권장비율: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행정자치부 능률행정과-839, 2004.7.12.)

※ 시·도 평균비율: 서울시교육청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평균

### ○ 중요사안에 대해 교육감 결재를 명시한 전결 처리 예외 조항 신설(2021.11.30.)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제5조의2 (전결 처리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의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향후 조치사항

### ○ 사무전결 규칙 정비를 통한 사전·사후 보고체계 확립

- (본문 보고조항 신설) 실·국장 위주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적정하게 분배하되 전결하는 사항 중 개별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사후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전결권자의 책무성 강화

###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신설 조항 개정 추진 (예시)

**제7조(보고)** 전결하는 사항 중 개별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전결권 조정과 각종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단위(세부)업무 추가·삭제 및 명칭 변경 등

### ○ 사무전결 규칙 정비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일정(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정비 계획(안) 수립: 2023.3월
- 부서별 자료 제출 요청 및 의견 수렴: 2023.3~4월
- 2023.5.3. 제318회 임시회 교육감 3기 조직개편(안) 수정가결에 따라 향후 신설 부서 사무를 포함한 규칙 개정(안) 수립 추진
- 2023.7.1.자 신설 부서 대상 전결 규칙 정비관련 의견 수렴: 2023.7~8월
- 자료 검토 및 의견 조정: 2023.8~9월
- 사무전결 규칙 개정(안) 수립 및 법제심의: 2023.10~11월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공포: 2023.12월

### ○ 전결권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부서 안내 강화

-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관련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서 제출과 같이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나 파장이 예상되는 경우 사무전결 규칙을 준수하여 교육감 결재 및 사전·사후 보고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부서 안내를 강화하고 규칙 정비를 시일내에 추진 하겠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시행 2021. 12. 1.]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37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사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 능력의 향상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4., 2021.11.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30.>

1. "결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교육감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1.30.>]

**제3조(적용범위)** 교육감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른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1.11.30.>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11.30.>]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교육감, 실·국장 및 과장(담당관)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30.>

1. 교육감 결재사항
  -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 나. 주요교육시책·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 다.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 라. 대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 마.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2. 부교육감 전결사항
  -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
  - 나. 장기적인 교육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 다. 실·국장 업무조정
3. 실·국장 전결사항
  -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총괄
  - 나.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담당관) 전결사항
  - 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
  - 나. 소관 사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다. 소관 사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 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담당 전결사항 :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다만,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는 과장(담당관)의 전결(결재)사항으로 함.<개정 2009.10.22., 2018.10.10., 2021.11.30.>

② 과장(담당관)은 별표의 담당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업무분담자(6급 이하, 장학사)를 지정하여 전결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30.>

**제5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결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 및 이해적인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2.19., 2021.11.30.>

② 총무과장·대변인 및 감사관은 별표의 각 과 공통사항 전결권자란의 실·국장으로 본다.<개정 2021.11.30.>

③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1.30.>

④ 이 규칙에 따라 당해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따르는 업무 처리는 그 차하급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21.11.30.>

⑤ 교육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30.>

[제목개정 2021.11.30.]

**제5조의2(전결 처리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의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30.]

**제6조(합의)** ① 교육감 결재사항과 부교육감 전결사항 중 교육행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30.>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1.30.>

**제7조 삭제** <2009.10.22.>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21.11.30.>

**부칙** <제1037호, 2021.11.30.>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2

## 전국 시·도교육청 위임전결사항 현황(2023. 3. 1. 기준)

시·도	구분	전결권자					교육감	계	시행일
		담당자		과장급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	담당						
서울	건수	2	264	1,293	482	156	<b>115</b>	2,312	<b>2021.12.1.</b>
	비율	0.1%	11.4%	55.9%	20.8%	6.7%	5.0%	100.0%	
부산	건수	21	168	847	421	72	<b>83</b>	1,612	2023.3.1.
	비율	1.30%	10.42%	52.54%	26.12%	4.47%	5.15%	100.00%	
대구	건수	9	117	745	331	105	134	1,441	2022.5.10.
	비율	0.62%	8.12%	51.70%	22.97%	7.29%	9.30%	100.00%	
인천	건수	0	167	848	261	120	137	1,533	2022.9.1.
	비율	0.00%	10.89%	55.32%	17.03%	7.83%	8.94%	100.00%	
광주	건수	0	128	957	436	236	177	1,934	2020.9.1.
	비율	0.00%	6.62%	49.48%	22.54%	12.20%	9.15%	100.00%	
대전	건수	1	122	770	318	118	93	1,422	2023.1.20.
	비율	0.07%	8.58%	54.15%	22.36%	8.30%	6.54%	100.00%	
울산	건수	10	143	897	276	119	114	1,559	2022.5.26.
	비율	0.64%	9.17%	57.54%	17.70%	7.63%	7.31%	100.00%	
세종	건수	0	311	715	323	106	250	1,705	2023.1.1.
	비율	0.00%	18.24%	41.94%	18.94%	6.22%	14.66%	100.00%	
경기	건수	0	175	1,437	495	136	179	2,422	2022.3.22.
	비율	0.00%	7.23%	59.33%	20.44%	5.62%	7.39%	100.00%	
강원	건수	5	163	765	323	118	101	1,475	2022.9.1.
	비율	0.34%	11.05%	51.86%	21.90%	8.00%	6.85%	100.00%	
충북	건수	1	155	705	348	122	97	1,428	2023.3.1.
	비율	0.07%	10.85%	49.37%	24.37%	8.54%	6.79%	100.00%	
충남	건수	0	164	877	357	147	109	1,654	2022.4.1.
	비율	0.00%	9.92%	53.02%	21.58%	8.89%	6.59%	100.00%	
전북	건수	26	250	712	455	113	86	1,642	2021.11.15.
	비율	1.58%	15.23%	43.36%	27.71%	6.88%	5.24%	100.00%	
전남	건수	0	119	773	422	137	84	1,535	2022.5.17.
	비율	0.00%	7.75%	50.36%	27.49%	8.93%	5.47%	100.00%	
경북	건수	4	224	746	333	132	160	1,599	2023.1.1.
	비율	0.25%	14.01%	46.65%	20.83%	8.26%	10.01%	100.00%	
경남	건수	0	288	1,149	485	134	143	2,199	2021.4.22.
	비율	0.00%	13.10%	52.25%	22.06%	6.09%	6.50%	100.00%	
제주	건수	11	166	1,086	428	93	108	1,892	2023.3.1.
	비율	0.58%	8.77%	57.40%	22.62%	4.92%	5.71%	100.00%	
평균	건수	<b>7</b>	<b>183</b>	<b>931</b>	<b>388</b>	<b>128</b>	<b>131</b>	<b>1,766</b>	
	비율	<b>0.3%</b>	<b>10.7%</b>	<b>51.9%</b>	<b>22.2%</b>	<b>7.5%</b>	<b>7.4%</b>	<b>100.0%</b>	

## □ 사안 개요

### ● 사안 발생 내용

- ❖ 유엔 인권이사회 서한 질의에 대한 우리교육청 답변서에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하여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는 내용 포함에 따른 부정적 언론 보도로 인한 파장

### ● 사안 경과 과정

날짜	기관(부서)	내용
2023. 1. 27.	외교부	❖ 유엔 인권이사회 서한에 대한 답변 요청
2023. 2. 1. ~ 2. 1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영문내용 국문 번역 및 검토
2023. 2. 20. ~ 2. 23.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학생인권옹호관 답변서 작성 및 부서장 검토
2023. 2. 24.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외교부로 답변 회신
2023. 3. 3.	SBS 기자	❖ 정보공개 청구
2023. 3. 8.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정보공개 답변
2023. 3. 9.	SBS	❖ (언론보도) SBS “유엔에 보낸 답변...”

## □ 사안 점검 개요

### ● (점검 기간) 2023. 3. 16. ~ 5. 16.

### ● (중점 점검 사항)

- » 중요한 사안임에도 파장 전결로 처리한 이유(교육감 및 부교육감 보고 누락)
- » 전결 규정상 미비점 확인
-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과정에 따른 문제점 검토 여부

## □ 점검 결과(처분 사항)

###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기관 경고

- » 전결 규정 미준수에 따른 처분 ☞ 전결규정 운영 부적정(소홀)

### ● (행정관리담당관) 개선 권고

-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개정 권고 ☞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 및 차상급자 보고 체계 방안 마련

## 2. - 자치구 (가칭)스쿨매니저 파견 및 시설보험 지원 -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 계획안 보고

교육재정과

-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시설 확충 책무를 가진 자치구와 협력사업 필요
- 학교시설개방시 자치구 파견 관리인력 상주하여 학생들과의 동선 분리, 안전관리 등 역할 수행
- ☞ 학교시설 개방 업무 경감 및 관리자 책임 부담 경감을 통한 학교체육 시설 개방 활성화 기반 마련, 개방률 상승 기대

### □ 사업 개요

#### ○ 시설관리인력 직접 파견·운영 및 시설보험 지원

구분	역할 내용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관리인력 가칭 스쿨매니저 직접 파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설 예약자 확인 및 신원체크를 통해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이용자 불법 활동 감시 및 개방시간 종료 후 시설물 점검 및 청소 등</li> <li>* 자치구 일자리창출과 및 시설관리공단인력 파견시 예산 불필요</li> </ul> </li> <li>○ 이용자 시설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학교체육시설 사용허가 단체</li> <li>- (보장범위) 지역주민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한 사고 등</li> </ul> </li> </ul>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학교 인센티브 지급 (교당 30,000천원) ※ 변경 가능</li> <li>○ 학교-교육지원청간 개방관련 총괄(개방 독려 등)</li> <li>○ 개방 민원창구 개설(신고센터 등 상시운영)</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제공 등</li> </ul>

#### ○ 자치구와 시범사업 운영(협의중)

- 사업대상: 00구청
- 사업내용: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이용자 안전사고 및 시설관리를 위해 자치구에서 직접 인력파견 및 시설보험지원 등
- 시범학교: 자치구별 3교 (초·중·고 각 1교)
- 사업기간: 2023년 6월중 (예정)

- 사업방법: 서울시교육청-00자치구청 간 업무협약
  - \* 향후 시범학교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25개구청 확대(예정)
- 추진 절차(흐름도)

단계	내용	협조체계
도입 준비 단계 (23년 6월)	00구청과 업무협약 및 실무협의	서울특별시교육청 00구청 각급학교
선정 단계(운영) (23년 6월~)	시범학교별 요구사항 최대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확대 단계 (24~)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개방학교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 00구청 각급학교

## □ 한계점

### ○ 가칭 스쿨매니저 사업 자치구청과의 협의 노력

-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자치구청과 실무협의 진행, 협의결과 부정적 의견 다수
  - 자치구에서 직접 인력 파견 및 관리운영 등에 대한 부담
  - 학교 체육시설 개방 담당 부서 부재 등의 사유로 사업의 어려움 표함

구 분	교육청	자치구청
학교시설 개방의 인식 차이	자치구가 생활 체육시설 확보의 책무를 가지고 학교가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과 보안을 손쉽게 지원	학교시설 개방은 서울시교육청 담당업무라는 인식 팽배

## □ 참고사항 (2023학년도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개방 현황)

(단위: 교, %)

구 분	학교 수	운동장				체육관(다목적강당)			
		보유	개방	미개방	개방률	보유	개방	미개방	개방률
공 립	976	958	720	238	75.2	928	409	519	44.1
사 립	371	330	186	144	56.4	260	99	161	38.1
<b>합 계</b>	<b>1,347</b>	<b>1,288</b>	<b>906</b>	<b>382</b>	<b>70.3</b>	<b>1,188</b>	<b>508</b>	<b>680</b>	<b>42.8</b>

※ (개방률) '21년(공립) 운동장 67.4%, 체육관 44.9% → '22년(공·사립) 운동장 65.3%, 체육관 36.0%

### 3.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관련 보고

교육시설안전과

### I

##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 방안 개선 추진 현황

### ① 추진경과

-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 방안 개선을 위한 TF 운영(2022. 10 ~)
- TF 운영 중 인조잔디 유해물질 측정방법 확인(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접면담)
-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소속기관) 질의 회신(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제1회 추경 6교 50억원 의원 증액(2023.4.10.)
  - 교육재정의 한정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나 자치구와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재원 분담 방안을 협의 요청 (이성배 예결위 위원장)
- 인조잔디 공사 중지 안내 공문 시행(2023.4.19.)
-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사업 발굴에 인조잔디 요청(2023.4.20.)

### ② 인조잔디 현황

- 내용연수(10년) 도래된 인조잔디 현황(추경편성 제외)

(단위: m<sup>2</sup>, 억원)

설치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학교수	4	7	11	8	14	13	57
면적(m <sup>2</sup> )	12,096	19,963	28,395	27,539	49,366	42,441	179,800
소요액	26	42	60	58	104	90	380

※ 인조잔디 내용연수 10년(조달청 8년), m<sup>2</sup>당 조성단가(약 210,000원/m<sup>2</sup>, 트랙 포함)

- 2024년 이후 교체 예정 예산 현황(10년 도래)

(단위: m<sup>2</sup>, 억원)

교체연도 (설치연도)	2024 (2014)	2025 (2015)	2026 (2016)	2027 (2017)	2028 (2018)	2029 (2019)	계
학교수	7	32	11	8	13	20	91
면적	20,728	119,737	55,136	37,264	47,773	94,538	375,176
소요액	44	252	116	79	101	199	791

※ 2023년 본예산 기준 비교(냉난방기교체782억원, 화장실462억원, 소방152억원, 방수350억원)

### ③ 예산확보 방안 검토

구분	교체기준	재원분담	교체시 고려사항
기존	내용연수(10년)	교육청·서울시·지자체 협의 후 공동 부담	국가시책사업 이행 확인 (내진, 석면)
신규	① 마사토 내용연수 ② 운동부 보유 ③ 외부재원 확보 노력	<b>【목표】 5:3:2 분담</b> 비율 예시(무상급식 기준)	<b>【훼손 및 증복】</b> 공사 시 운동장에 모듈러 설치로 비품 보관 및 이전 활용 또는 증장비 출입으로 운동장 훼손 예상

※ 협의방법: 구두협의, 방문면담, 공문시행 등 다각적 방법 수 차례 시도

- 현재까지 서울시 부정적 / 서대문구청 긍정적

## II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잠정 보류

### 배경

#### 1 인조잔디 운동장 3년 주기 유해성 검사 실시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유해물질 발생 여부 주기적 점검, 필요한 조치 취할 것
-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 제 4조」
  -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유지관리 계획」(교육시설안전과-9326, 2021.9.1)
  - 학교 운동장(마사토, 인조잔디 등)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교체 전까지 유해성 검사 3년주기 실시

#### 2 유해성 검사 추진 결과

- '21년 감사원 감사 전국 학교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적으로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학교의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 전수조사 실시
- 탄성포장재 523개소 중 103개소에서 기준치 초과: 71개소 예산 교부, 32개소 자체처리

연도	설립별	학교 수	예산액(천원)	비고
2022	공립	56교	4,201,483	
	사립	11교	1,039,590	
합 계		67교(71개소)	5,241,073	

#### 3 유해물질 측정방법 KS 표준 개정 예정

-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소속기관) 질의회신(환경측정분석센터-2514, '23.4.13.)
  - 인조잔디 원료(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KS표준) 개정 이후 유효성 비교시험 및 검증절차 완료 후 고시 예정 확인 회신
- KS 표준 적용
  - 학교의 인조잔디 설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KS표준(KS F 3888-1, 인조잔디 시스템)을 준수하여야 하며, KS 표준에 따르면 인용표준은 최신판을 적용해야한다고 명시됨

### 교육청 입장

- 인조잔디 유해물질 측정방법 KS 표준이 개정될 경우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 주기로 유해성 검사 시 최신 KS 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인조잔디 조성 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KS 개정 고시 이후 추진하고자 함

## 4.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안) 보고

미래학교추진단

2023년 교육부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재정사업 물량을 축소(50% 축소)하는 등 변화된 상황에서 작년 시의회 부결된 BTL 사업을 재추진하여 노후한 학교 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시의회 협조 요청

###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개요 (교육부 방침)

- 【사업방식】 재정사업(75%), **BTL사업(25%)**
- 【재원분담】 지방비(70%), **국비(30%)**

### □ 2021~2023년 BTL 사업 추진 현황

연도	BTL 학교수	학교명	총 사업비	추진현황
2021	7교	도신초, 동구로초, 수유초, 유현초, 금호여중, 신화중, 청량중	1,524억원	○ <b>실시설계 중</b> ※ 2023년 착공: 4교(수유초, 유현초, 청량중, 도신초) 2024년 착공: 3교(금호여중, 신화중, 동구로초)
2022	5교	동명초, 동신초, 불광초, 용두초, 인현초	1,272억원	○ <b>사업물량 소멸</b> ※ 작년 시의회 부결(2022. 11. 29.)로 2022년 BTL 물량 소멸
2023	5교 (예정)	미정	1,322억원 (한도액)	○ 2022년도 말 '2023년 국회 BTL 한도액' 배정

※ 2024년 한도액: 1,256억원, 2025년 한도액: 1,505억원

### □ 2023년 BTL 사업 추진(안)

- 2022년 BTL 사업 대상교로 재추진
- BTL 사업 재추진 사유
  - (대상교 신뢰 회복) 2022년 대상교는 BTL 사업을 전제로 행정절차를 거쳤으므로 BTL 사업을 재추진함으로써 교직원과 학부모와의 신뢰 회복
  - (신속한 사업 진행) BTL 사업 특성상 연내 고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미 일부 사전절차(사전기획, 미래학교검토위원회 등)를 완료한 2022년 대상학교로 진행

### □ 2023년 BTL 사업 미추진 시 문제점

- 【사업물량 축소 및 서울교육재정수입 감액】 BTL 사업은 재정사업과 분리된 물량으로, BTL 사업 **미추진 시 물량 소멸**
- 【타 시도로의 사업비 이전】 BTL 사업 포기 시 타 시도로 재정수입 이전
- 【2023년 재정사업 물량 50% 축소】 교육부 계획에 따라 2023년 재정사업 물량이 50% 축소되어 BTL 사업마저 미추진 시 서울 개축물량 현저히 감소
  - ※ BTL 사업비(2022년 1,272억원) 재정투입 전환 시 교육청의 환경개선사업(냉난방, 인조잔디 등) 및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국책사업 추진에 어려움 예상(향후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예산 편성 시 어려움 가중 예상)